



보도자료			
 <b>환경부</b> 	<b>보도일시</b>	<b>배포 후 즉시</b>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담당 부서</b>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병화 과장/이제훈 서기관/박정철 사무관 044-201-7340 / 7341 / 7345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한준욱 과장 / 노우영 사무관 044-201-7360 / 7363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최민지 과장 / 손병용 서기관 044-201-7380 / 7383
<b>배포일시</b>	2018. 4. 2. / 총 7매		



## 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 정상 수거한다

- ◇ 수도권 48개 업체 모두 현장에서 금일 중 정상수거 입장 밝힘
- ◇ 조만간 폐플라스틱 등 관리 종합대책 마련 추진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월 2일 기준,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당초 대부분의 수도권 회수·선별업체에서 수거 거부를 통보하였으나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한 결과이며,
  - 금일 회수·선별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 특히,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일부 수집 업체에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수거 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잘못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 한편,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계 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4월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이번 긴급조치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으로,
  - 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수거·재활용 업체, 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 “국민들께도 반드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폐플라스틱 등을 배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첨언하였다.

- 붙임 1. 질의응답.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세부 설명자료.
  3. 중국 폐기물 수입규제 품목 (4개군, 24개 품목)
  4. 폐플라스틱·폐지 대중 수출 동향 끝.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박정철 사무관(☎ 044-201-7345, 폐기물 수출입), 폐자원관리과 노우영 사무관(☎ 044-201-7363, 분리배출), 자원재활용과 손병용 서기관(☎ 044-201-7383, 재활용)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폐비닐·페스티로폼을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되는지?**

- 폐비닐·페스티로폼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하여야 하는 품목이며,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2항
-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자원을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폐자원관리법」 제68조제3항
- 다만, 재활용을 위한 분리·선별, 세척 과정에서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폐비닐 등은 생산된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여야 함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귀서 배출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종류별, 색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 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

구 분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배출 사례	
		○	X
플라스틱용기 (페트병 등)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플라스틱류 (기 타)	다른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비닐류 (필름류)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 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 1. 플라스틱 폐기물(Plastic waste or scrap)

-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Plastic waste from living sources)
  - PET(HSC. 39159010) - 압축품에 한함
  - 폴리스티렌(HSC. 391520)
  - PVC(HSC. 391530)
  - 알루미늄복합필름(HSC. 391590)
- 기타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 스크랩(분말, 찌꺼기 등 포함)

## 2. 종이 폐기물(Waste Paper)

- 분류되지 않은 종이 폐기물(Unsorted waste paper, HSC.470790)

## 3. 철 및 비철 슬래그, 스케일링(Slag, dross, scalings)

- 철, 철강 슬래그, 스케일링과 그밖에 웨이스트(HSC.2619)
- 비소가 포함된 금속류의 재와 찌꺼기(HSC.262099)
  - ※ 산화물에 의한 유해성 논란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금지목록에 포함

## 4. 직물폐기물(Waste textile materials)

- 울 또는 동물의 털, 방적사 폐기물(가닛스톡은 제외한다)  
(HSC.5103)
- 동물의 털, 울 등의 가닛스톡(HSC.5104)
- 면사 폐기물(HSC.5202)
- 양모사, 인조섬유 폐기물(HSC.5505)
- 신제품이거나 중고인 누더기, 낚싯줄, 밧줄, 로프와 케이블 등 직물원료  
(HSC.6310)



중국 수입금지 된 플라스틱 폐기물  
(PET 스크랩)



중국 수출 가능 플라스틱  
(펠릿)



중국 수입금지 된 폐지(미분류 폐지)



중국 수출 가능 종이류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철 및 비철 슬래그, 스케일링



중국 수출 가능 고철  
(철 압축 스크랩)



수입금지 직물폐기물

**붙임 4**

**페플라스틱·폐지 대중 수출 동향**

□ (페플라스틱) 주로 국내 수요가 적은 저급(유색, 복합재질)의 PET 파쇄품 (플레이크, 스크랩), PVC 수출이 급감

○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2% 감소(22,097톤 → 1,774톤)

\* 타 플라스틱(PE, PP 등) 재활용품은 펠릿(용융·압출한 상태로 원재료로 취급받음)으로 수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음

구분	2017년 (1~2월)	2018년 (1 ~ 2월)
중국	22,097톤	1,774톤
베트남	5,246톤	7,254톤
기타(홍콩 등)	3,199톤	1,597톤

□ (폐지) 전년 동기(1~2월) 대비 對中 수출량 급감(51,832톤 → 30,803톤, 40.6%↓), 특히 골판지 수출량은 더 크게 감소(25,002톤 → 10,635톤, 57.5%↓)

(단위 : 톤)

연도별		계	폐신문지	폐골판지	기타(혼합)
'17년	1월	12,491	123	9,050	3,318
	2월	39,341	998	15,952	22,391
계		51,832	1,121	25,002	25,709
'18년	1월	12,148	2,408	1,224	8,516
	2월	18,655	1,174	9,411	8,070
계		30,803(↓40.6)	3,582(↑219.5)	10,635(↓57.5)	16,586(↓35.5)

**※ 국내 폐지 가격동향(골판지 기준)**

(단위 : 원/kg)

구분	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17(평균)	130	123	132	129	131	130	134	130
2018.1	136	128	139	136	138	138	139	137
2	123	116	122	118	119	122	120	122
3	90	87	91	89	89	91	89	88

※ 출처 :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18.1~3월)